

# 한국균학회 윤리위원회 규정

**제 1 조 (설치)** 본 학회 정관 제 7장 제 27조 제 1항에 따라 본 학회의 각종 사업 수행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 관련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윤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**제 2 조 (목적)** 본 위원회는 연구, 교육, 출판 등 본 학회 또는 회원의 학술활동 전반에 걸친 윤리 관련 문제를 다룬다.

**제 3 조 (구성 및 위원 선출)**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본회 제 7장 제 27조 제 1항에 의거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

⑤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
**제 4 조 (임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연구와 학회활동과 관련해 회원의 윤리문제를 관리한다.

**제 5 조(임기)** 위원장,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**제 6 조 (회의 및 의결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으로 개최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

④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.

**제 7 조 (보고)** 위원회는 사업업무를 이사회,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,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**제 9조 (기타사항)**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## 부칙

본 규정은 2010년도 이사회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.